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78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수의 위촉권자·범위 확대	3
2. 공수의 해촉 사유 명확화	9
3. 공수의 수당·여비의 지급·부담 주체 확대	11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16.

다.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기초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일부 개정 및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수의 위촉권자 · 범위 확대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의 진료·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수의의 위촉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 위촉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수의) ① <u>시장·군수</u> 는 동물 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u>다만</u>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공수의)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u> ----- <u>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과</u> ----- ----- ----- <u>. 다만, 시·도 가축방역기관과</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u>시장·군수</u> 가 지시하는 사항	6.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u> <u>및 시장·군수</u>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 촉받은 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 라 한다]는 <u>시장·군수</u> 의 지휘·감독 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u> <u>사, 시장·군수</u> -----.

가축방역관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로, 가축방역 체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가축방역관 인력이 원활하게 충원될 필요가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의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바, 그 충원은 ① 의사인 공무원, ② 공중방역 의사,²⁾ ③ 공수의³⁾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의사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의사중에서 위촉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최근 ① 수의사인 공무원의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 부족한 보수 및 승진 지체 등의 처우 문제, ②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현역병의 복무기간 축소⁴⁾ 및 봉급 인상⁵⁾ 등 복무환경 개선에 따른 선호도 하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로 부터 충원되는 가축방역관 역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4) 현재 각 군의 현역 병 복무기간은 18개월(육군 및 해병대), 20개월(해군) 및 21개월(공군)으로, 공중방역수의사는 이들의 약 2배에 달하는 37개월 가량(군사교육소집 기간 포함)을 복무해야 함
 - 5) ① 현역병 월급(2024년 기준)

계급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현역병	640,000원	800,000원	1,000,000원	1,250,000원

- ② 공중방역수의사 월급(2024년 기준)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공중방역수의사	중위 1호봉 (2,041,400원)	중위 2호봉 (2,142,200원)	중위 3호봉 (2,243,000원)

【 최근 5년간 가축방역관 충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원	1,484	1,548	1,545	1,573	1,526
현원	1,570	1,605	1,580	1,503	1,391
충원률	105.8	103.7	102.3	95.5	91.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기준 가축방역관 정원 및 현원 】

(단위: 명)

구분	계	검역 본부	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정원	1,526	312	31	13	37	32	10	20	16	15	164	125	77	139	136	121	107	141	30
현원	1,391	261	32	10	28	30	9	15	15	13	166	119	78	140	123	110	98	115	29
부족 인원	135	51	-1	3	9	2	1	5	1	2	-2	6	-1	-1	13	11	9	26	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인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는 각각 공무원과 병역의무 수행이라는 신분상 한계로 인하여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 대응을 위하여 가축방역관의 또 다른 충원경로인 공수의 제도가 주목받고 있음.

공수의 제도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민간 수의사에게 동물의 진료·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는 제도로, 민·관 협업 가축방역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공수의는 ①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②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③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⁶⁾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로부터 충원되고 있는데,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총 978명의 민간 수의사가 공수로 위촉되어 있고, 이들 중 823명(84.2%)이 가축방역관으로도 위촉되어 있음.

【 지역별 공수의 위촉 현황 (2024년 8월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위촉인원	978	24	17	15	22	5	6	13	9	145	66	58	90	70	117	175	119	2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현행법상 공수의 위촉권한이 시장·군수에게만 주어져 있어, 가축전염병이 시·군 행정구역 경계와 무관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의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단위의 가축방역 업무를 위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수의의 위촉권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수의에게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가축방역 업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조합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한편, 개정안은 현행 공수의 충원 경로를 확대하여 시·도 가축방역 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공수의 위촉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공수의 위촉권한 확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공수의를 위촉·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의 공수의 위촉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 대한 공수의 위촉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이미 공무원 신분으로서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별도로 공수의로 위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임.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을 통하여 공수의가 시·군 범위를 넘는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수의 위촉권한 및 위촉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공수의 해촉 사유 명확화

개정안은 법률에서 공수의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수의)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1조(공수의) ① ~ ② (생략)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u> 1. <u>제1항의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u> 2. <u>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u> 3. <u>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u> 4. <u>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u>

현행법은 공수의의 해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수의를 위촉하고 있는 일부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공수의의 해촉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7)와 「지방자치법」 제28조8)에 따르

7)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한데,

「수의사법」과 그 하위 법령에는 공수의 해촉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공부문의 업무를 위촉받아 수행하는 공수의의 해촉 사유로서 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마다 해촉 사유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거나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공수의의 해촉 사유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수의 중 일부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위촉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해촉 규정이 없어 적정한 방역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수의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⁹⁾

8)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9)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공수의 위촉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인바, 개정안 제21조제3항의 공수의 해촉 주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공수의 수당·여비의 지급·부담 주체 확대

현행법은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를 위촉권자인 시장·군수가 지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앞서 안 제21조제1항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시장·군수가 지급하는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¹⁰⁾ 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급하는 ----- ----- -----.

현행법 제22조는 위촉권자가 시장·군수뿐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공수의 위촉권자를 확대하는 안 제21조제1항을 수용한다면 이에 맞추어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주체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의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임

안 제22조제2항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원만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재정여건이 우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군수의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부담을 일부 부담한다면 국가 가축방역 체계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시장·군수의 공수의 위촉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점, 현행법으로도 1차 감독기관인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지급부담 일부를 대신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급부담의 일부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함께 요구될 것으로 생각됨.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제21조제1항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공수의 위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장·군수가 위촉한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